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 안
번호

2394

박춘선 의원 (국민의힘, 강동3)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박춘선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2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,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- 가로수는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소중한 도시 자산입니다. 이러한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비용의 적절한 징수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.
- 이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 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, 체납시 징수 절차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안 제21조제4항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비용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.

그리고 안 제23조제3항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, 관리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이와함께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, 관련 규정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로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